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10호

2026년도 조선해양플랜트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고

2026년도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5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한-미 조선협력 기반에 미국 조선시장 진출을 통한 우리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친환경 선박과 AI 전환 대응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조선산업 생태계 육성

나. 사업 내용

○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 (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6.4~'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7개 사업(세부내용은 RFP 참조)

No.	사업명	별첨(RFP)
1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RFP
2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RFP
3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지원	RFP
4	중소조선설계엔지니어링기술지원	RFP
5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플랫폼구축	RFP
6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구축	RFP
7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RFP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단,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 중소조선및기자재미국진출 사업은 단계구분 없음))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 단,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중소조선및기자재미국진출사업은 해당 기준 제외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에서 증액 불가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단, 관련 법령에 따라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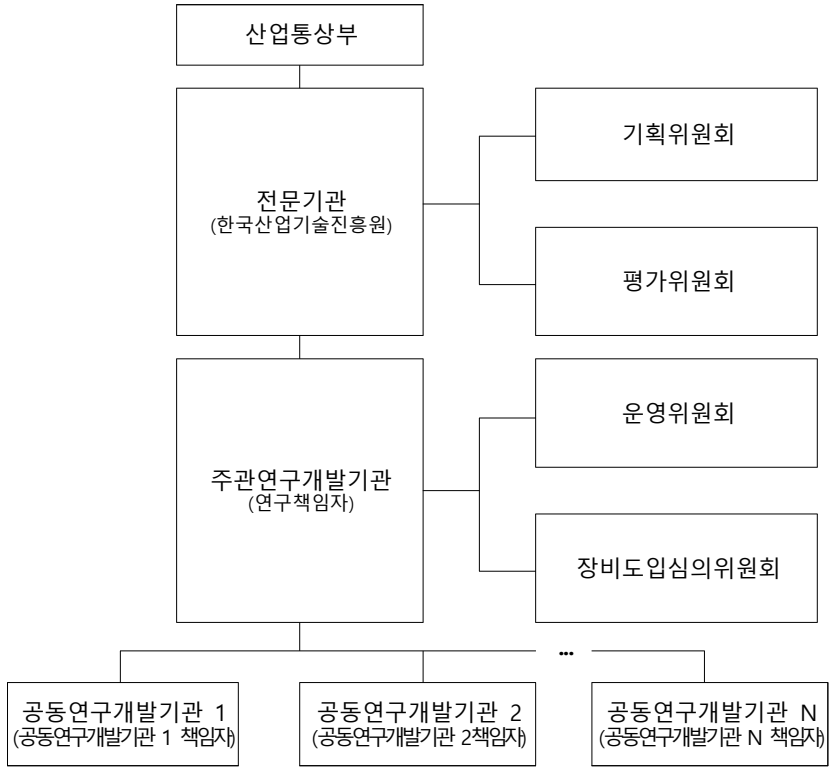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 기타 : 위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맞추어 계상

3. 추진체계



4.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등」에 따름

5.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6. 1월		**~'26. 2월**		**'26. 2~3월**		**'26. 3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26.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4~5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적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인허가) 및 관련 법률 검토 등의 충실성 ㅇ 사업 수행 역량(센터 및 장비구축 등 기반조성사업)
사업내용 적정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구체성(종류·사양, 장비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될 연구장비의 활용성
	사업비 적절성	ㅇ 사업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금(정부지원 사업비외) 확보 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 수행시 기관 부담금 등의 투자계획 변경여부 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6.01.05. ~ 2025.02.04. 18:00**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X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X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u>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u>**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u>(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u>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u>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u>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률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11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2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 기반조성 사업 수행이력 (단, 분원 또는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사업 수행이력) * 자유양식이며 수행확인서 등 증빙 포함(공고일 기준 5년수행과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 전체 연구개발비가 5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6. 관련법령 등

-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No.	사업명	문의처 (02-6009-내선)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1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임형곤수석 (3462)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사무관 (044-203-4336)
2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3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지원	이희정책임 (3464)	
4	중소조선설계엔지니어링기술지원		
5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실증 플랫폼구축		
6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구축	이승호책임 (3471)	
7	AI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최영연구원 (3465)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9, 4321)